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 규정

제1조 (목적)

본 학회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한민족어문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본 학회 '학술상'은 우수한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에게 시상함으로써 신진 연구 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자격)

학술상은 한민족어문학회 회원으로서 최근 1년 이내(매년 6월과 12월)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학 1인, 국문학 1인을 선정, 수여한다.

제3조 (심사 대상 선정)

해당 연도에 제출된 박사 학위 논문 중에서 동일 전공 교수 1인 이상(대상자의 지도 교수는 제외)의 추천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심사 규정)

심사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시상 내용)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8조 (시상 시기)

학술상은 본 학회 전국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9조 (규정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